

2026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27.

(재)제주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제주 배경 또는 소재(문화, 역사, 생활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주다양성영화 제작 장려
-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단계에서의 영화적 연구와 창의적 접근을 지원하여 시나리오 및 기획안의 완성도 및 작품 경쟁력 강화
- 기획개발 단계 작품의 제작 단계 진입을 촉진하여 지역 기반 영화 생태계의 자립적·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11. 30.까지
- 약정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 60일 이내(약정기간 2개월)
- 지원내용 : 시나리오 및 기획안 개발 단계에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중심의 기획개발 고도화 지원
※ 본 사업은 전문가 활용비(멘토링비)만 지원하며, 자료비·회의비·항공료 등 기타 진행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실사영화 및 다큐멘터리로서, 촬영 이전 단계에서 시나리오 및 대본 집필 등 기획개발을 진행 중인 작품
- 지원자격 : 당해연도 이전부터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 창작자 중, 실사영화 다큐멘터리 등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감독, 메인 프로듀서, 메인 작가

※ 도내 지역 또는 학교 출신자, 명예도민증 또는 재외도민증 소지자 포함
※ 포트폴리오 1편 이상 제출 필수(지원신청서 양식 내 스크리너)
※ 신청자(사) 당 1편만 신청 가능하며 지원자격 증빙서류 미체출 시 심사 제외

○ 지원규모 : 3편 내외, 총 지원금 6,000천원

지원규모	비고
총 3편 × 편당 2백만원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선정편수 조정 가능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 사용 용도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전문가 활용비	멘토링비	· 시나리오 및 기획안 개발을 위한 창작 중심 멘토링 사례비 · 제작기획, 예산, 투자, 유통 등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영화전문가 멘토링 비용
	자문비	· 기획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역사·법률·기술 등 분야별 전문 자문 비용 · 작품 내 인물의 직업 및 환경 설정 등 사실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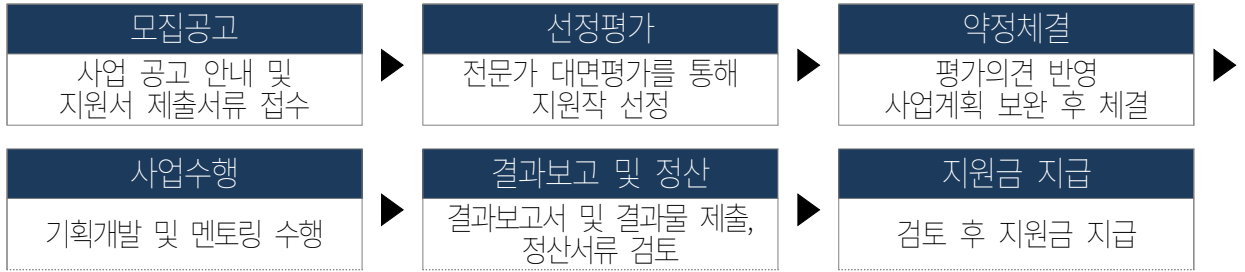
○ 멘토링 운영

- 가. 신청자가 작품 특성에 맞는 멘토 및 전문가를 직접 구성
- 나. 영화전문 멘토는 개봉작 실적을 보유한 영화감독, 작가, 프로듀서에 한함
다. 멘토 및 전문가는 기획개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자

○ 멘토링 및 자문 기준

- 가. 사례비 기준
 - 시간당 80,000원, 1일 최대 5시간 이내 인정 (1일 최대 400,000원)
- 나. 영화전문 멘토링 범위
 - (작가·감독) 시나리오 구조, 인물 설정, 연출 방향 등 창작 중심 멘토링
 - (프로듀서) 제작기획, 예산 설계, 투자 및 유통 전략 등 제작·산업화 멘토링
- 다. 전문 분야 자문 기준
 - 문화·역사·법률·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활용 가능
 - 작품 내 인물의 직업적 특성 및 사실성 확보를 위한 자문 포함 (의사, 변호사, 프로파일러, 법의학자, 해녀 등 관련 직군 전문가)
 - 기획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며, 자문 횟수는 최대 2회 이내
- 라. 멘토링 및 자문 운영 기준
 -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가능
 - 멘토링 및 자문 수행 시 일정, 내용, 참여자, 주요 피드백 및 반영 결과를 포함한 수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제출해야 함
 - 수행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운영절차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4. 27.(월) ~ 5. 22.(금)

○ 접수기간 : 2026. 5. 11.(월) ~ 5. 22.(금) 14:00까지, 12일간

※ 접수 마감일(5월 22일 금요일 14:00)까지 도착하지 않은 이메일은 접수되지 않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lick0925@ofjeju.kr)

※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064-735-0622)

※ 제출서류(양식)는 진흥원 누리집(<https://ofjeju.kr>)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참조

※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가능(진흥원 본원 2층 콘텐츠육성팀)

○ 제출서류

붙임	제출서류	유의사항	제출형식
1	지원신청서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붙임 1~11],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및 메일 제목은 '영화명_제주 다양성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으로 제출
2	사업계획서	· 내용이 명확히 파악되도록 작성	
3	신청자(사)/감독, 참여인력 소개	· 주요 경력 및 수행역할 중심으로 작성	
4	멘토 이력	· 주요 작품 및 멘토링 경력 포함	
5	전문가 자문 이력	· 자문 분야 및 관련 경력 중심으로 작성	
6	시나리오 또는 기획구성안	· 장·단편 극영화 : 트리트먼트 또는 시나리오 제출 · 다큐멘터리 : 기획구성안 제출	
7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확정된 참여인력 작성	
9	평가위원 추천표	· 무작위로 3개의 번호를 지정하여 체크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제작사 : 사업자등록증 · 개인 : 주민등록초본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직인 또는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사)에 있음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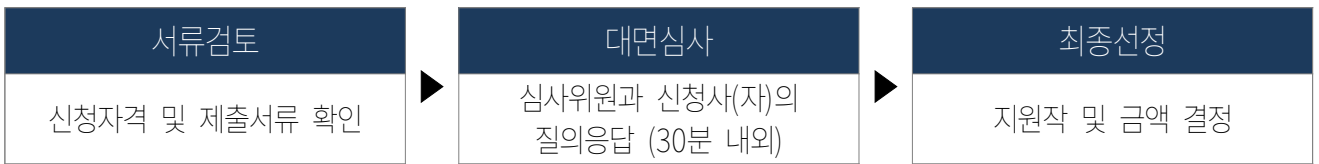
담당자	메일주소	문의전화
콘텐츠육성팀 고경욱 주임연구원	click0925@ofjeju.kr	064-735-0622

4.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

○ 심사일정 : 2026년 6월 중 (※ 진흥원 내·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접수현황에 따라 심사의 세부내용 조정 가능)



○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독창성 및 참신성 • 트리트먼트, 기획구성안의 완성도(이야기 구성의 완결성) 	40점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작품 보완 및 개선 가능성 	20점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의 실질적 실현성 및 제작실행(영화화) 가능성 	20점
지역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내 지역 요소 반영도(제주소재, 로케이션 등) 	20점
합 계		100점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지원 선정

※ 선정작품의 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 후순위 작품에게 지원 승계할 수 있음

5.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

○ 지원조건

가. 선정작은 2026. 9. 30.까지 약정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약정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획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일정(2026. 11월) 및 약정기간(2개월)을 고려하여 약정체결 기한을 제한함

나. 기획개발 수행기간(약정기간 60일) 내 전문가 멘토링을 중심으로 기획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다. 기획개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정산자료 포함) 및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라. 제출 결과물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기획개발 전·후 비교가 가능한 시나리오 또는 기획안 제출

※ 수정 전·후 버전 및 주요 개선사항(변경 포인트) 포함

• 전문가 멘토링 수행 내역 제출

※ 멘토링 일정, 내용, 참여자, 주요 피드백 및 반영 결과 포함

• 멘토링 결과를 반영한 최종 결과물 제출

※ 시나리오, 트리트먼트, 기획구성안 등

• 향후 제작계획 또는 발전계획 제출

※ 제작 일정, 투자 및 제작 추진 방향 등 포함

마. 기획개발 결과물을 기반으로 작품이 제작(영화화)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상영본(크레딧) 및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함



※ 기획개발 작품이 제작(영화화) 시 사전에 제작일정 및 내용을 진흥원에 필히 보고하여야 함

바. 진흥원은 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신청자(사)는 관련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 진흥원은 본 사업을 통해 확보된 결과물 및 수행 정보를 정책 연구 및 사업 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자료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함

○ 참여제한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나. 신청일 기준 촬영이 진행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촬영 예정인 작품

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산하 유관기관 포함)로부터 기획 개발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국고·기금·타 지자체·민간 지원금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동일 항목 중복수혜는 불가

라. 신청일 기준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선정 후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프로듀서, 작가 등 개인인 경우

마.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환수금 등이 미완료/미납 중이거나 진흥원 관련 규정 또는 협약 및 계약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프로듀서, 작가 등 개인인 경우

바.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 「영화인 신문고」 기준 스태프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아.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자.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유의사항 (기획개발 단계 기준)

가. 본 사업은 기획개발 단계 지원사업으로, 촬영 중심의 제작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나.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존 촬영 자료를 활용한 기획개발은 가능하나, 추가 촬영이 주된 사업 내용이거나 제작 진행 단계로 판단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6. 지원금 지급 · 집행 · 정산

○ 약정체결

가. 선정작 대상 심의위원의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후 최종 약정을 체결함

나.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 방법, 정산기준, 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약정체결함

다. 선정작은 2029. 9. 30.까지 약정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약정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획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일정 및 약정기간을 고려하여 약정체결 기한을 제한함

○ 지원금 집행

가. 신청자(사)는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전문가 활용비(멘토링비)는 약정체결 시 등록된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전문가 활용비(멘토링비) 항목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기타 진행비(자료비, 회의비, 항공료 등)는 집행 불가함

다. 집행기간은 약정서상 기획개발 수행기간(60일)으로 함

라. 진흥원은 신청자(사)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해 확인 ·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자(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지원금 정산 및 지급

가. 신청자(사)는 기획개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흥원이 요구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검토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 본 사업은 참여자가 비용을 선지출한 후 정산을 통해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임

-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한도 금액 내 지급
- 지원금 한도 미만으로 지출한 경우 : 실제 지출 금액 기준 지급

다. 제출서류

- 공문 및 결과보고서
- 집행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멘토링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멘토링 수행 내역(일정, 내용, 참여자, 주요 피드백 및 반영 결과)
- 기획개발 결과물 일체(시나리오, 트리트먼트, 기획구성안 등)
- 기획개발 전·후 비교자료 및 향후 제작계획

※ 멘토링 및 자문 수행 내역(일시, 방식, 참여자, 주요 내용, 피드백 및 반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제출해야 하며, 수행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진흥원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따라 수행되며, 선정된 신청자(사)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철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허위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선정을 받은 경우
- 약정기간 내 기획개발을 수행하지 않거나, 멘토링을 포함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미비한 경우
- 지원신청 내용과 비교하여 작품의 내용, 수행 계획 등이 사전협의 없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산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신청자(사)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작품(작가 포함)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 ※ 해당 작품에 사용되는 모든 외부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는 신청자(사)가 사전에 해결하여야 함
 -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 해지 또는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유로 협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도치를 취할 수 있음
-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사)의 책임으로 함
- ※ 상기 공고 내용은 필요 시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함